KOSHA GUIDE

C - 27 - 2011

- (2) 방호선반의 받침기둥은 비계용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3) 방호선반의 최외곽 받침기둥에는 방호울 또는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 방호선반 외측으로 낙하한 낙하물이 구조물내부로 튀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.

8. 사용 시 주의사항

- (1) 방호선반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방호선 반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.
- (2) 방호선반의 주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방호선반에서 튕겨 나오는 낙하물에 대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3) 방호선반에 적치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.